



피고용인의 권리

전국노동관계법

전국노동관계법(NLRA)은 피고용인이 단체를 결성하여 고용주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 및 기타 보호되는 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러한 활동 중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NLRA*의 적용을 받는 피고용인은 특정 형태의 고용주 및 노조의 불법 행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이 공지사항은 NLRA에 따른 피고용인의 권리와 고용주 및 노조의 의무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귀하의 직장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제공된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NLRA에 따른 고발사항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연방 기관인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로 연락하십시오.

NLRA에 따른 귀하의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조를 조직하여 임금, 노동 시간 및 기타 고용 계약 조건과 관련하여 고용주와 협상할 권리
- 노조를 구성, 가입 또는 지원할 권리
- 임금, 혜택, 노동 시간 및 기타 노동 조건의 계약을 스스로 선택한 피고용인 대표를 통해 고용주와 집단 협상할 권리
- 임금, 혜택 및 기타 고용 계약 조건이나 노조 결성에 대해 동료 또는 노조와 의논할 권리
- 고용주나 정부 기관에 업무 관련 고발사항을 직접 제기하거나 노조의 도움을 받는 등 다양한 문제 제기 방법을 이용하여 한 명 이상의 동료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조치를 취할 권리
- 목적이나 수단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파업 및 피켓 시위 권리
- 노조 가입 또는 회원 자격 유지를 포함한 어떠한 노조 활동도 하지 않을 권리

고용주의 다음과 같은 행위는 NLRA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 업무 시간 전후와 쉬는 시간 등 업무 외 시간에 노조에 대한 논의 또는 노조 모집을 금지하는 행위, 또는 주차장이나 휴게실 등 업무 외 장소에서 업무 외 시간에 노조 문건 배포를 금지하는 행위
- 노조 활동 참가 의욕을 상실시키는 방식으로 노조 지원 및 활동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

노조 또는 귀하를 대표하는 노조가 고용주와 교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NLRA를 위반하는 불법 행위입니다.

- 노조에 대한 피고용인의 지원을 얻기 위해 위협하거나 억압하는 행위
- 귀하가 노조 간부를 비판하였다는 이유 또는 노조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충처리를 거부하는 행위

- 노조를 가입하거나 지원했다는 이유, 상호 지원 및 보호를 위해 단체 행동에 참여했다는 이유 또는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해고, 강등, 전근, 근무조 변경 등의 기타 불리한 조치를 취하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피고용인이 자신들을 대표할 노조를 선출하는 경우 직장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 노조 지원을 방해하거나 격려하려는 목적으로 승진, 임금 인상 또는 기타 혜택을 약속하거나 부여하는 행위
- 특별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직장에서 노조 모자, 버튼, 티셔츠 및 핀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
- 평화로운 노조 활동 및 집회를 염탐 또는 촬영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가장하는 행위

- 고용 센터에 직업 추천을 하는 데 있어 차별적 기준 또는 절차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는 행위
- 노조 관련 활동을 이유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차별하도록 만들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행위
-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용인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귀하 또는 동료는 단체 교섭 대표로 활동할 노조를 선출한 경우, 고용주와 노조는 고용 계약 조건을 규정하는 구속력 있는 서면 계약에 이르도록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교섭해야 합니다. 노조는 교섭하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귀하를 공정하게 대표해야 합니다.

불법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권리나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으로 불법 행위가 발생한 후 6개월 이내에 즉각적으로 연락하여 권리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위반 사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위반 사항의 직접 영향을 받은 직원이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NLRB는 법률에 위반되게 해고한 피고용인을 재고용하고 상실된 임금과 혜택을 지불하도록 고용주에 명령할 수 있으며, 법률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고용주 또는 노조에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은 가까운 NLRB 지역 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이는 다음 웹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http://www.nlr.gov>.

다음 무료 전화번호로 NLRB에 문의하십시오:

1-866-667-NLRB(6572), 청각장애인용 (TTY) 1-866-315-NLRB(1-866-315-6572)

If you do not speak or understand English well, you may obtain a translation of this notice from the NLRB's Web site or by calling the toll-free numbers listed above.

*전국노동관계법은 대부분의 민간 사업장 피고용인에 적용됩니다. 공공 사업장 피고용인, 농업 및 가사 근로자, 독립 계약자, 부모나 배우자에게 고용된 근로자, 철도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 및 철도 운송업자와 감독자(단, NLRA 위반을 거부하여 차별 받은 감독자는 적용 가능)는 NLRA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본 문서는 공식적인 정부 공지사항이며 어느 누구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